#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1 발의연월일: 2020. 7. 15.

발 의 자:윤후덕·전혜숙·이원욱

박 정・김철민・강병원

김경협 • 이학영 • 한정애

진선미 의원(10인)

## 제안이유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민족 모두의 이익과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 및 동북아 경제권 형성 등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임.

이에 물류공급 등 남한 기업들의 안정적 기업 활동 보장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외가공지역(OPZ)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물류중심 및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을 갖춘 국토 중앙부 비무장 지대의 북한 인접지역에 보다 성숙된남북경제협력을 위한 특별구역 지정 및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모델사업으로 남한의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제고와 북한의 공업기술력 향상이라는 남북 상호 비교우 위 분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남북 주민

간 공동생산 참여 및 상호 이해와 협력의식을 제고함으로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을 한반도 및 동 북아 교통·물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에 시범 지정하고, 개 발·운영 및 확대할 수 있는 입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북한인접지역, 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투자기업, 북한진출기업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을 경기도 파주시 관할 지역 내에 우선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제2항).
- 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 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정·수립 또는 승인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10조).
- 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준공검사,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 터 19조까지).
- 마.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제·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북한진출기업의 입주, 산업평화의 유지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24조까지).

바.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인력 및 물자교역, 협력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북한주민의 출입·체류 등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한과 북한이 상생 공영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위하여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북한인접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이남의 시·도 및 시·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의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북한과 경계를 접하는 지역을 말한다.
- 2.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이란 남북교류에 참여하는 기업의 투자 확대 및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이러한 기업의 북한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한 인접지역에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 3.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5. "북한진출기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한 과 북한 사이의 물자교역·협력사업 등을 시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의 발전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평화경제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장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 제5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을 단계적

- 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확정한 경 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7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남북교류협력 확대
  - 2. 북한이 설치한 각종 경제특별구역과의 연계
  - 3. 북한과의 경제공동체 형성 및 촉진 가능성
  - 4.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의 유치 가능성
  - 5.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 6.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수준
  - 7. 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 또는

접근성

- 8.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관련 영향 요소
- ② 통일부장관은 경기도 파주시 관할 지역 내에 평화경제특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적으로 우선 지정하여 조성·개발할 수 있다.
- 제8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이 제6조제1 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 2. 평화경제특구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 및 시행방법
  - 3. 재원조달방법
  -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5.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6. 교통망 확충 및 산업유치 계획
  - 7.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
  - 8. 환경보전계획
  - 9.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조성계획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제9조(개발계획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2 항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제12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 제10조(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 또는 승인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개발사업의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사업의 구역의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시·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각각 준용한다.

## 제3장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의 시행

- 제12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 2.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 행할 수 있는 자
  -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 4.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개 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6. 평화경제특구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은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한 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4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련 서류의 사본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1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 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1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1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

조에 따른 관광지 ·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 14.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1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 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 1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19.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
- 2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 2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 2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

- 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24.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 2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 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 책의 검토
-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 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제18조·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일반산업단지개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
-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34.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②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6조(개발사업의 착수) ①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개발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 제17조(토지수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있다.
  - ②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조에 따

- 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8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 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장 내・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 제20조(세제 및 자금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에 내·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한다)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수 있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수 있다.
- 제21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용 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중 개발계획에 의하여 평화경제특구에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를 관할하는 시·군의 공장 총량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가 평화경제특구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토교 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 업종에 한하여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북한진출기업의 입주) 통일부장관과 북한진출기업이 평화경제

특구에 입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고용하고자 하는 북한 근로자의 인력 규모
- 2. 입주 이후 3년 이내에 북한에 진출예정인 기업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4조(산업평화의 유지) 입주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장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설치 등

- 제25조(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설치) ①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특별구역 위원회를 둔다.
  - 1. 평화경제특구의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2.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평화경제특구에서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5.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 6.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2명 이상의 위촉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 ⑤ 위촉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소속 공무원의 임용)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 내·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우수인력을 소속 공무원 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제27조(옴부즈만 등) ① 입주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옴부즈만을 둔다.
  - ② 평화경제특구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商社紛爭)을 공정·신속하 게 해결하고 국내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 일부에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의 지부를 설치한다.

#### 제6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

- 제28조(절차 간소화) 국가는 입주기업 임직원의 북한 방문이나 입주기업의 북한주민(법인과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물자교역· 협력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제29조(북한주민에 대한 편의제공)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이 평화경제특구에 출입·체류하거나 입주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편의를제공할 수 있다.
- 제30조(남북협력기금에 따른 지원 등)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한 내국인기업이 북한과의 물자교역·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융 자할 수 있다.

## 제7장 투자환경과 생활여건의 개선

제31조(투자환경등의 개선) ①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에서의 투자

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된 서비스제공(이하 "투자환경등"이라 한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투자환경등의 개선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에 북한 주민의 거주 또는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장 보칙

- 제32조(투자장려업종 및 퇴출업종등의 고시) ① 통일부장관은 평화경 제특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사업, 정보통신사업, 환경친 화적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장려업종을 고시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중 대통령 이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퇴출업종등"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퇴출업종등이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한 경우에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한 자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해당 평화경제특구에 이미 존재하는 퇴출업종등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 제33조(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수렴) 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9장 벌칙

-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 2. 제32조제2항에 따른 퇴출업종등의 영업행위를 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